의안번호	2206093
의 뢰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1. 2.
추계번호	24F55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―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,620억원, 2029년 3,85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,217억원 (연평균 3,7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2조)	−3,620	−3,738	−3,859	−11,217	−3,73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

○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❑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○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

※ 단,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○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○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</th><th>일반법인</th><th>조합법인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적용대상</td><td>일반법인</td><td>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과세표준</td><td>당기순이익
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
+손금불산입
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
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
= 과세표준</td><td>당기순이익
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항목[1])
= 과세표준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과표 구간별 세율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[2]</td><td rowspan="2">9%</td></tr>
<tr><td>2~20억원</td><td rowspan="2">19%[2]</td></tr>
<tr><td>20~200억원</td><td rowspan="3">12%</td></tr>
<tr><td>200~3,000억원</td><td>21%[2]</td></tr>
<tr><td>3,000억원 초과</td><td>24%[2]</td></tr>
</table>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❑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289억원 수준

○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−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[1]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−	6,053	−	11,167	−5,113
2억원 이하	1,181	618	9	56	10	62	−6
2~20억원	2,273	19,307		1,740	20	3,407	−1,666
20~200억원	753	37,307	12	4,032		7,311	−3,279
200~3,000억원	8	1,913		225	22	387	−16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
–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−	−	−	11,167	−	−	10,57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0	0.05	62	9	0.04	5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0	1.6	3,407	19	1.5	3,21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0.5	7,311		10.0	6,93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2	55.0	387	21	52.3	36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5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−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−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−D)	
산출세액	6,053	11,167	−5,113	10,577	−4,524	−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–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	–
	조정후 (A×[1−11.5%])	2,894	2,961	3,743	4,524	3,289[1)]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○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세수효과	−3,620	−3,738	−3,859

(3) 추계결과

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,620억원,

2029년 3,85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,217억원 (연평균 3,7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2조)	−3,620	−3,738	−3,859	−11,217	−3,739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−6788−4835	jhpark83@assembly.go.kr